

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
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대상

4월부터 30만원으로
인상됩니다!



수급대상자

-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 합산액)이 선정기준액** 이하인 분

* 만 20세 이하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가능

** 선정기준액(2019년)

-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
-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



지급금액

- 기초급여액 월 25만원 → 월 30만원으로
인상*('19. 4월부터 시행)

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며, 이 외에는 253,750원

- 부가급여액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

준비서류

- 본인(중증장애인) 신청 시

- 신청자의 신분증
- 본인명의 통장사본

- 대리신청 시

- 대리인 신분증
-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

* 기준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

신청장소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문의처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· 보건복지 상담센터

위험할 땐 119
힘겨울 땐 129



보건복지부



장애인이 행복한 나라,
따뜻한 대한민국